

설계용역 평가양식(결과표)

1. 설계용역평가 결과표(기본설계용역)

평가담당자 (서명)

용역명											
도급방법	[]단독 []공동 []분담 []혼합			세부분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용역기간 ~			용역금액(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용역금액(원)					
	대표사										
	구성사										
적용비율	%		평가 연월일			평가점수		점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평균
대분류	중분류				위원	위원	위원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 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A32. 참여기술인 투입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2. 설계용역평가 결과표(실시설계 과정평가)

평가담당자

(서명)

용역명											
도급방법	[]단독 []공동 []분담 []혼합			세부분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용역기간	. . . ~ . . .			용역금액(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용역금액(원)				
	대표사										
	구성사										
적용비율	%		평가 연월일	. .		평가점수	점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평균
대분류	중분류		위원		위원	위원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 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A32. 참여기술인 투입										

-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3. 설계용역평가 결과표(실시설계 결과평가)

평가담당자

(서명)

용역명											
도급방법	[]단독 []공동 []분담 []혼합			세부분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용역기간	. . . ~ . . .			용역금액(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용역금액(원)				
	대표사										
	구성사										
적용비율	%		평가 연월일	. .		평가점수	점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평균
대분류	중분류		위원		위원	위원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